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84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강명구 · 임종득 · 조지연  
이달희 · 김태호 · 서명옥  
김장겸 · 서일준 · 권영진  
한기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하고 있으며,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일정량의 면세 석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러나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및 전기농업기계는 주된 동력원이 석유류가 아닌 전기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차량의 제원이나 용도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동력원의 차이로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의 규모화 · 스마트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부문의 전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화석연료 중심 농업기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동화 · 전기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부응하는 세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및 그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2(농업용 전기기계등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이하 이 조에서 “농업용 전기기계등”이라 한다)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의 공급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민이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용 전기기계등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하는 전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06조의12(농업용 전기기계등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 제10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이하 이 조에서 “농업용 전기기계등”이라 한다)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의 공급에 대해서는 해당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p> <p><u>② 농민이 제1항에 따라 면제 받은 전기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정한다.</u></p> <p><u>1. 해당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세액</u></p>

2. 제1호에 따른 면제세액의 10  
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